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나175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류창범, 정명수

피고, 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허현, 류상우

변론 종결 2024. 9. 3.

판결 선고 2024. 10.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단5027644 판결

환송전_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8나6669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836,182.86달러 및 그 중

- 1) 미화 133,839.6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5. 2. 8.까지 연 2.8371%,
 - 2) 미화 134,046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2015. 2. 8.까지 연 2.8391%,
 - 3) 미화 42,12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30.부터 2015. 2. 8.까지 연 2.8336%,
 - 4) 미화 140,91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29.부터 2015. 2. 8.까지 연 2.8351%,
 - 5) 미화 30,06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2015. 2. 8.까지 연 2.8391%,
 - 6) 미화 58,86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2015. 2. 8.까지 연 2.8349%,
 - 7) 미화 67,32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2015. 2. 8.까지 연 2.8336%,
 - 8) 미화 91,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5.부터 2015. 2. 8.까지 연 2.8291%,
 - 9) 미화 293,132.7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15. 2. 8.까지 연 2.8336%,
 - 10) 미화 145,431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2. 8.까지 연 2.8311%,
 - 11) 미화 110,966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0.부터 2015. 2. 8.까지 연 2.5336%,
 - 12) 미화 37,672.2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2015. 2. 8.까지 연 2.5351%,
 - 13) 미화 223,41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4.부터 2015. 2. 8.까지 연 2.5316%,
 - 14) 미화 88,24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23.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51%,
 - 15) 미화 10,2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23.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51%,
 - 16) 미화 93,488.36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51%,
 - 17) 미화 14,3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2. 26.까지 연 2.8291%,
 - 18) 미화 18,59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4.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16%,
 - 19) 미화 102,597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2. 26.까지 연 2.8291%,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고,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미국 등으로 여성의류를 수출하는 국내회사이다.

나. 피고의 A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및 보증부 대출

1) B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3. 9. 11. A와 A의 수입자 B회사(이하 'B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증서는 '○ 보증금액 : 미화 500,000달러, ○ 수입자명 : B회사, ○ 결제 조건: T/T 9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31.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B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50,915.60달러를 대출하였다.

2) C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3. 10. 31. A와 A의 수입자 C회사(이하 'C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보증서는 '○ 보증금액 : 미화 300,000달러, ○ 수입자명 : C회사, ○ 결제 조건: T/T 9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 23.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제2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C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247,240.00달러를 대출하였다.

3) D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3. 7. 22. A와 A의 수입자 D회사(이하 'D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3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3보증서는 '○ 보증금액 : 미화 500,000달러, ○ 수입자명 : D회사, ○ 결제 조건: T/T 6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제3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D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9, 10번 기재와 같이 총 438,563.70달러를 대출하였다.

4) E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2. 6. 13. A와 A의 수입자 E회사(이하 'E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4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4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4보증서는 '○ 보증금액 : 미화 800,000달러, ○ 수입자명 : E회사, ○ 결제 조건: T/T 6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6. 28.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제4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E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372,048.20달러를 대출하였다.

5) F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3. 8. 14. A와 A의 수입자 F회사(이하 'F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5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5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5보증서는 '○ 신용보증한도 : 미화 100,000달러, ○ 수출계약 상대방 : F회사, ○ 결제 조건: T/T 6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8.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제5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F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88,240.00달러를 대출하였다.

6) G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3. 9. 3. A와 A의 수입자 G회사(이하 'G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6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6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6보증서는 '○ 보증금액 : 미화 150,000달러, ○ 수입자명 : G회사, ○ 결제 조건: T/T 6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7.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제6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G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36,578.36달러를 대출하였다.

7) H회사와의 거래 가) 피고는 2013. 7. 25. A와 A의 수입자 H회사(이하 'H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하 '이 사건 제7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7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7보증서는 '○ 보증금액 : 미화 200,000달러, ○ 수입자명 : H회사, ○ 결제 조건: T/T 60 days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제7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의 H회사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2번 기재와 같이 102,597.00달러를 대출하였다.

8) 신용보증조건(특약사항) 및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의한 보증조건(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본 보증서는 회전 운용됨

2. 본 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선적분에 한하며, 귀 행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

나. (1)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 행 명의의 계좌로 지정 또는 (2)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 행에 개설된 귀 행이 관리가능한 수출자 명의의 계좌로 지정

3. 약관 제11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신용보증서"라 함)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이하 "수출채권"이라 함)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신용보증"이라 함)의 내용을 정하는 약관입니다.

제2조(신용보증대상)

① 이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수출물품 도착 후 또는 일람 후 2년 이내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한 때에 적용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에서 생산 가공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2.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은행"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수출자"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수입자"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입자를 말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합니다.
- ⑤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부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한 대출로서 피고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건별대출을 말합니다.

제4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은 은행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제5조(보증하는 채무)

피고는 은행이 수입자(신용장개설은행을 포함함)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는 신용보증부대출 상환채무금액을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증채무의 범위)

- ①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1.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 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2. 신용보증부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는 제외됨)에 의한 이자액

제7조(면책)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2. 은행이 제2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3. 은행이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7조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제12조(주의의무)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6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① 피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따라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여부 또는 지급할 대위변제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기한은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은행이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공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보증채무이행 대상여부 판정에 특별히 시일을 요하는 등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16조 제3항의 공사가 정한 이율은 피고의 무역보험관련 규정 중 보상규정, 위 보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국외보상요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연 17%이다.

다. 원고의 사고통지 및 피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4. 12.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부 대출의 대상이 된 수출거래(이하 '이 사건 수출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결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출대금이 결제기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고, 2015. 1. 8. 이 사건 제1 내지 4보증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2015. 1. 26. 이 사건 제5 내지 7보증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의 이행거절 통지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증채무 이행 거절을 통지하였다.

B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사고건 전부)② 자기자금 상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10건(선적일 '14.1.27~7.11)의 송금인이 수입자에서 수출자 현지법인(J회사)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③ 선적서류 불일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수출자가 제출한 B/L(선하증권)과 보험증권상 VESSEL명이 불일치
C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3건/제1, 2, 4번)* 총 4건중 1건(제3번1) 별지 목록 순번 7번 기재 대출)은 AIRWAY BILL(항공운송장)로 서명 있음② 자기자금 상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12건 모두 수입자가 아닌 J회사가 대금 결제하였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③ 선적서류 불일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수출자가 제출한 B/L과 보험증권상 VESSEL명이 불일치
D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사고건 전부)② 자기자금 상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7건

B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사고건 전부)② 자기자금 상황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10건(선적일 '14.1.27~7.11)의 송금인이 수입자에서 수출자 현지법인(J회사)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③ 선적서류 불일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수출자가 제출한 B/L(선하증권)과 보험증권상 VESSEL명이 불일치
	모두 수입자가 아닌 J회사가 대금 결제하였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 등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
E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5건/제2 내지 5번)* 총 6건중 1건(제1번2) 별지 목록 순번 11번 기재 대출)은 AIRWAY BILL로 서명 있음② 자기자금 상황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8건 모두 수입자가 아닌 J회사가 대금 결제하였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 등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③ 선적서류 불일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PI3)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의 출임말임.번호 중복, PO4) Purchase Order(발주서)의 출임말임.와 기타 서류 간 원산지 불일치 등
F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사고건 전부)② 자기자금 상황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2건 모두 수입자가 아닌 J회사가 대금 결제하였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 등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 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
G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사고건 전부)② 자기자금 상황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2건 모두 수입자가 아닌 J회사가 대금 결제하였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 등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상기 매입건 모두 수출계약서에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매입은행 내 별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보증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③ 선적서류 불일치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PO와 기타 서류간 원산지 불일치, 동일 PI상 수량 불일치 등
H회사	① 선적서류 하자 : 약관 제7조(면책) 제1호 신용보증조건 위반- 선하증권 :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 누락(사고건 전부)② 자기자금 상황 : 약관 제7조(면책) 제3호 및 제12조(주의의무)- 사고건 이전 매입한 4건 모두 수입자가 아닌 J회사가 대금 결제하였으나, 수입자 신용도 악화 및 허위수출 가능성 등 자기자금상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고건 매입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8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 하에 A의 각 수입자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22번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순번대로 각각 '이 사건 제○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미화 1,836,182.86달러 및 이에 대하여 A의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진정한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수출거래 중 이 사건 제8 내지 16, 22대출과 관련한 수출거래는 허위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중 이 사건 제7, 11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있어서 선적서류로 볼 수 없는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이 누락된 선하증권을 징구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 징구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보증약관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의 면책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중 이 사건 제7, 11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있어서 발행인의 서명 내지 날인이 누락된 선하증권을 징구하였다.

나) A가 수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인 J회사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여 왔음에도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A의 수출채권을 매입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4, 5, 11 내지 16, 18, 19, 21, 22대출을 하면서 징구한 선적서류 상호간에 상품수량, 원산지, 운송선박, 상품중량, 선적지, 견적송장 등이 불일치하거나 중복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A로부터 선적서류의 수입자 앞 발송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4)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신의칙상 보호의무로서 수출채권 매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러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허위 수출채권과 신용보증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신용보증조건이란 이 사건 각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하고(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4항), 이 사건 각 보증서상 수입자는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F회사, G회사, H회사(이하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신용보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출거래가 A와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 사이의 거래이어야 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11, 12, 18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와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 사이의 수출거래 존재 여부는 원고가 청구하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위와 같이 정하여진 수출거래의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보증서상 수입자와 동일하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정하여진 상대방과의 수출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① 수출대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수입업자의 신용상의 위험을 담보하려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증은 실제 수출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인 원고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실제로 수출거래가 있는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징구를 신용보증조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위 서류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는 신용보증사고를 '수입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보증사고는 실제로는 당해 수입자와 수출거래가 없어 수입자가 수출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 피고도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은행에게 매입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의무만 있음을 전제로 매입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는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면책사유 심사대상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2)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2,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수출거래 상대방은 A의 미국 현지법인 J회사이고, 이 사건 각 보증서상 수입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는 실제로는 A가 아닌 J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한 바 없다.

나) J회사는 수출품을 도착지인 미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보증서상 수입자들에게 인도하였으나, 일부는 위 수입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 인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제15대출과 관련한 수출거래 물품은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을 하면서 A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징구하였다.

- A와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발주서(PURCHASE ORDER)
- A가 발행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하인이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로 된 운송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이 사건 제7, 11대출의 경우)
- 보험증권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수출거래에 있어서 실제 상대방 및 수입자는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가 아닌 J회사이나, 원고가 A로부터 징구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상 수입자가 이 사건 각 보증서상 수입자와 동일한 이 사건 각 수입명의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적서류 징구와 신용보증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채권 외에 별다른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피고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출을 진흥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받은 다음 실행한 대출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정한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수출채권이 실재하는 수출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수출물품이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O/A 방식의 수출거래에서 은행은 선적서류 자체를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체결 사실 및 수출물품 선적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선적서류 사본 등을 징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뿐 아니라 상환증권성이 없는 운송장도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7, 11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당시 원고는 A로부터 선적서류로 운송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참조용 유통불능 선하증권 사본 용지에 'SURRENDERED'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없지만 운송계약과 화물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징구 대상 선적서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상, 운송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송하인인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처음부터 선하증권 원본 발행 없이 선하증권 사본 용지를 이용하여 '서렌더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서렌더 선하증권' 상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징구 대상인 '선적서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수출채권 매입 시 A로부터 위와 같은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조건인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증약관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내용이 되는 제12조는 그 문언상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 관련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서 은행에게 사후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신용보증관계 성립 전 수출채권 매입 시부터 은행에게 사전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와 함께 규정된 제10조의 통지의무, 제17조의 권리보전에 관한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들이고, 제7조 제3호는 위 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면책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제12조 역시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과 관련한 사후적인 주의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사후적 주의의무 조항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수출채권 매입 시 은행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주의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A로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그 수출채권의 진정성 등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의 사후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수출채권 매입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로서 수출채권 매입시 주의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지, 가사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무 위반이 이 사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1,836,182.86달러(이 사건 각 보증서상 보증원금 한도 내에서의 이 사건 각 대출원금 합계, 이하 '미화' 명칭은 생략한다.) 및 그 중 133,839.6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5. 2. 8.까지 약정이자율[갑 제3호증의 1 내지 7(대출금원장조회표)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연 2.8371%의, 그 중 134,046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2015. 2. 8.까지 연 2.8391%의, 그 중 42,12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30.부터 2015. 2. 8.까지 연 2.8336%의, 그 중 140,91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29.부터 2015. 2. 8.까지 연 2.8351%의, 그 중 30,06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2015. 2. 8.까지 연 2.8391%의, 그 중 58,86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2015. 2. 8.까지 연 2.8349%의, 그 중 67,32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2015. 2. 8.까지 연 2.8336%의, 그 중 91,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5.부터 2015. 2. 8.까지 연 2.8291%의, 그 중 293,132.7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15. 2. 8.까지 연 2.8336%의, 그 중 145,431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2. 8.까지 연 2.8311%의, 그 중 110,966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0.부터 2015. 2. 8.까지 연 2.5336%의, 그 중 37,672.2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2015. 2. 8.까지 연 2.5351%의, 그 중 223,41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4.부터 2015. 2. 8.까지 연 2.5316%의, 그 중 88,24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23.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51%의, 그 중 10,2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23.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51%의, 그 중 93,488.36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51%의, 그 중 14,3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2. 26.까지 연 2.8291%의, 그 중 18,59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4.부터 2015. 2. 26.까지 연 2.8316%의, 그 중 102,597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2. 26.까지 연 2.8291%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연 17%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16조 제3항, 피고의 국외보상요령(갑 제28호증) 제27조 제1항에 의해 인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면책처분을 한 이상 위 약관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연체금 지급의무가 없거나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면책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이율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율이
연 15%로서 위 이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최복규

판사오연정

별지

- 1) 별지 목록 순번 7번 기재 대출
- 2) 별지 목록 순번 11번 기재 대출
- 3)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의 줄임말임.
- 4) Purchase Order(발주서)의 줄임말임.